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의안번호	265
------	-----

제출년월일 : 2007. 6.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
(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2. 입안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 6. 25)로 수립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검토대상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편입하고자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입안내용

-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신규 지정)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신규	A	17	현석동	109	3.2	190%	12층 이하	60%	3	주택 재개발	전면	재상정

4. 주민의견청취 결과

- 주민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06. 9. 15 ~ 2006. 9. 28(14일간)
 - 공람장소 : 서울시 주거정비과, 마포구 주택과
- 제출의견

제출자	의 건	조 치	비 고
이용일외 75	주택재개발방식반대 (지역주택조합 찬성)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등 도시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으로 시행 필요	불채택
이명희외 2	주택재개발구역 포함 요구	구역경계에서 약 50m 이격되어 있어 지역여건상 일부필지만 구역에 포함하기는 어려움.	불채택
이영원외 345	주택재개발방식 찬성		채택

5. 관련부서 협의 결과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건설교통부	교통유발 요인에 따라 가로망 계획 필요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

(다음 페이지에 계속)

6.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 조치의견

의결년월일	의결사항	조치의견
2007.2.15	(조건부 동의) 사업지 주민간 개발방식에 대한 이해 상충 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민합의 를 도출한 후 재개발 추진 여부를 판단 하여 추후 의회 의견을 다시 들을 것.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은 구비서류 의 미비로 반려된 상태이며 80%이상의 동의율 의 합의는 추후 정비계획지정후 조합설립 요건 으로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주민들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강력한 요청으로 재상정을 요구하고 있어 본안을 다시 상정코자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